



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
교육 공무원법 개정안

교육과학기술위원회



INDEX

제안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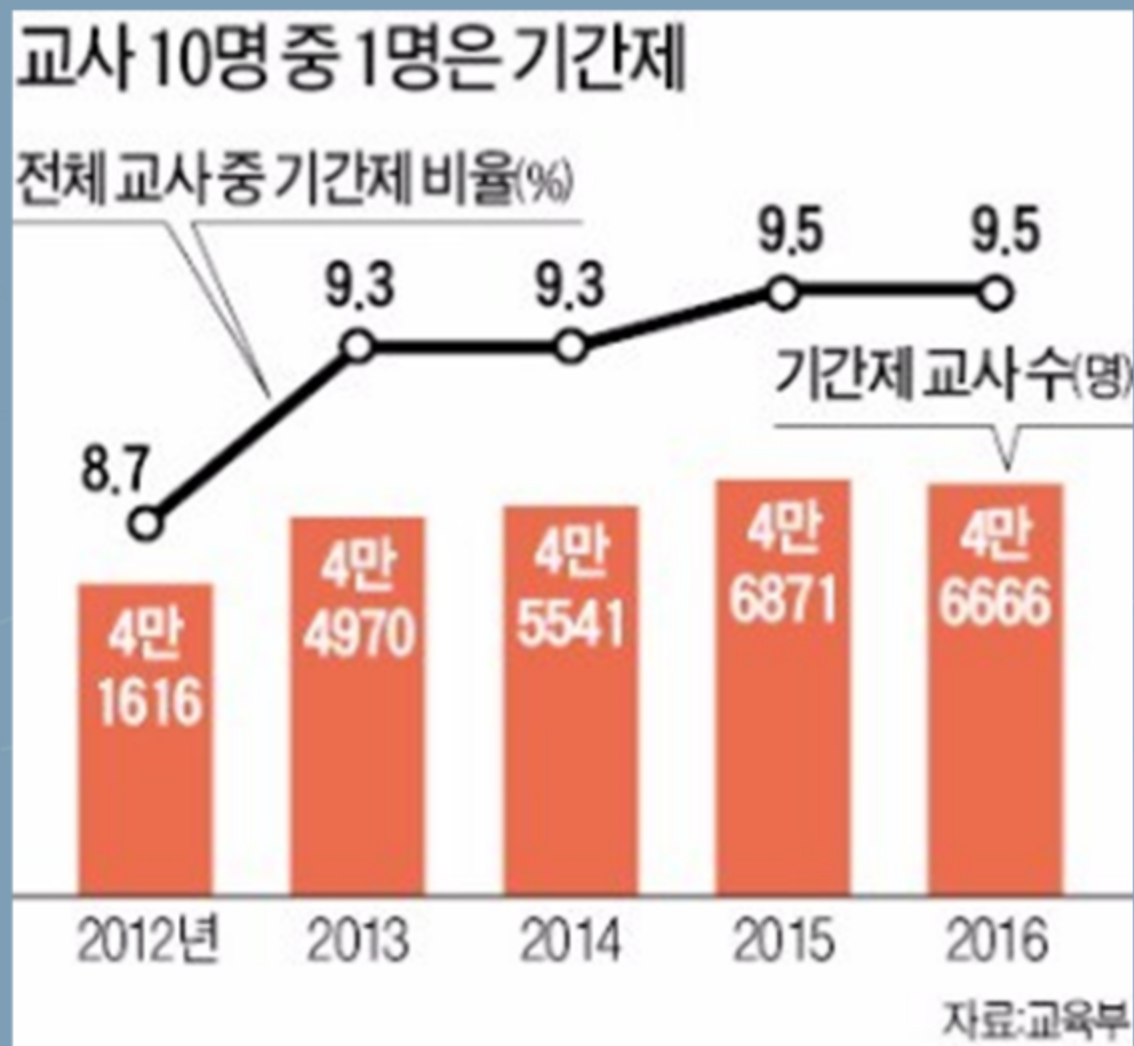
주요 골자
및 청구문
대조표

기대효과

질의 응답



1. 제안 이유



1. 제안 이유

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

기간제 교원에 대한 **처우 개선 필요**

초

조선일보

송고시간 | 2017/09/28 08:56



(서울=연합뉴스) 임형섭 기자 = 전국 초·중·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학급에서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.



2. 주요 골자 및 신,구문 대조표

제49조(고충처리)

- ① 교육공무원(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누구나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


2. 주요 골자 및 신,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 32조 (기간제교원)</p> <p>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6조, 제70조, 제73조,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, 제75조, 제76조, 제78조, 제78조의2, 제79조, 제80조, 제82조,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.</p>	<p>제 32조 (기간제교원)</p> <p>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6조, 제70조, 제73조,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, 제75조, 제76조, 제78조, 제78조의2, 제79조, 제80조, 제82조,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.</p>



3. 기대효과

기간제 교원들의 고충 해소를 통한 **심리적 안정감**

기간제 교원들의 **지위 향상**

기간제 교원의 **인권 보장**

교육의 질 향상



Q & A



출처 (뉴스 기사 자료)
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9/28/0200000000AKR20170928043800001.HTML?input=1195m>

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385626&CMPT_CD=P0010&utm_source=naver&utm_medium=newsearch&utm_campaign=naver_news



감사합니다

